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종복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2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: 윤종복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김영철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도문열, 민병주,
박춘선, 박환희, 신복자,
유만희, 윤기섭, 이병윤,
이봉준, 이희원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39조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m 이하로 제한하고, 예외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5층이하로서 20m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처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일정 부분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, 높이 제한은 사업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모아타운사업을 비롯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- 이에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높이 최고 한도 20m는 유지 하되, 층수 제한을 없애 1~2개 층의 추가 건설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연경관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5층이하로서 20m이하에서 20m이하로 하고, 층수 제한 (5층)부분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72조,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, 「소규모주택정비법」 제48조,
제4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7항 중 “5층 이하로서 20미터”를 “20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</p> <p>①~⑥ (생략)</p> <p>⑦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(이항 제2호에 한함)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<u>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</u>로 할 수 있다.</p> <p>1.2. (생략)</p>	<p>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</p> <p>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미터</u>----- -----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100600000022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윤종복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6.

회신일 : 2023.10.1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제7항 중 “5층 이하로서 20미터”를 “20미터”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